

## Client Alert

February 2021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여  
연락주시십시오:

**Adeline Wong**  
Partner  
+603 2298 7880  
adeline.wong@wongpartners.com

**Krystal Ng**  
Partner  
+603 2298 7937  
krystal.ng@wongpartners.com

기 소 예  
부장, 한국기업지원  
+603 2298 7903  
soyeh.ki@wongpartners.com

## 말레이시아: 이전가격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납세자를 처벌하는 조항 도입

도입된 말레이시아 재정법 2020 의 여러 개정 내용 중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1967 (Income Tax Act 1967)의 이전가격에 대한 개정 내용은 주목할 만 합니다.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처벌 조항은 말레이시아 국세청의 (Malaysian Inland Revenue Board, **MIRB**) 요청으로 이전가격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납세자가 이전가격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RM20,000 에서 최대 RM100,000 까지의 벌금 그리고/혹은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된 법조항과 동일하게, MIRB 은 이전가격서류 제출 기한을 기존의 30 일에서 14 일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2012 를 개정했습니다.

### 주요 시사점

처벌 조항의 도입은 세금 및 이전가격 부문에 대한 증대된 세무감사를 바탕으로 MIRB 가 엄격히 집행할 것을 시사합니다. 이전가격서류 제출에 제공되는 기한이 14 일로 감축된 바, 이전가격서류 제출을 준비할 때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이전가격서류를 준비해 둔 납세자는 내용이 MIRB 의 가이드라인의 요건을 잘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이전가격정책이 세무감사에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도록 잘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

####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의 최근 개정 내용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여러 개정 내용 중 말레이시아의 이전가격 제도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MIRB 의 이전가격서류 제출 요청을 준수하지 못한 납세자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소득세법 113B 조항) ("**이전가격서류 처벌 조항**"). 자세한 설명은 아래 부문을 참고하십시오.
- 이전가격 조정이 추가 세금 조정 (소득세법 140A(3C))으로 인한 것과 관계없이, 국세청장은 이전가격 조정액에 최대 5%의 추가세금 (surcharge)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 연관 관계사 간 거래 (controlled transaction)의 구조를 인정하지 않거나 수정할 수 있는 국세청장의 기존 권한을 법제화하는 조항으로 법에 포함되었습니다.

### 이전가격서류 처벌 조항의 도입

납세자는 연간 소득세 신고 시 이전가격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특정 과세년도에 대해 이전가격서류를 제출하라는 MIRB 의 요청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가격서류 처벌 조항의 도입됨으로서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이전가격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납세자는 **RM20,000 에서 최대 RM100,000**의 벌금 그리고/혹은 최대 6 개월까지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p><b>2021 년 1 월 1 일 이전에</b> 시작된 이전가격 세무감사의 경우</p>	<p>MIRB 의 서면 공지의 날짜로부터 <b>30 일</b> 이내</p>
<p><b>2021 년 1 월 1 일 당일</b> 혹은 이후에 시작된 이전가격 세무감사의 경우</p>	<p>MIRB 의 서면 공지의 날짜로부터 <b>14 일</b> 이내</p>

요약하면, 이전가격서류 처벌 조항의 도입은 납세자가 단지 특정 과세년도의 이전가격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되는 것으로, MIRB 가 세무감사를 수행하지 않고도 납세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 기업의 대응방안 및 Wong & Partners 조세법무그룹의 지원

이전가격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처벌될 뿐 아니라 이전가격 조정액에 추가세금 (surcharge)을 부과하는 권한이 도입된 바, 이전가격 세무감사는 확대될 것이며, 특수관계사 간의 거래는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전가격서류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특수관계사 간의 거래가 이전가격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이전가격정책 및 서류를 준비해두고 있는 기업은 마련된 정책과 서류들이 이전가격 세무감사시 충분히 방어가능한 수준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Wong & Partners 의 조세법무그룹은 경제학자들과 세무 변호사들로 구성된 다방면과 다분야의 이전가격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전략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이전가격 플래닝** - 저희 이전가격팀은 기업에게 지속가능한 플랜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합니다.
- **이전가격서류 준비 및 방어** - 법에 준하는 이전가격서류 준비를 지원할 뿐 아니라 서류들이 세무감사에 충분히 방어적이도록 준비합니다.
- **이전가격 세무감사 지원** - 국세청의 세무감사 시, 감사 대응 및 방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기업과 기업의 담당팀을 지원합니다.

\*\*\*\*\*

Wong & Partners 법률 사무소는 기업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제 및 법률 동향과 기업의 준수 여부 및 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영어로 쓰여진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자료이며,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ongpartners.com](http://www.wongpartners.com)

Wong & Partners  
Level 21  
The Gardens South Tower  
Mid Valley City  
Lingkaran Syed Putra  
59200 Kuala Lumpur

